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실행 조직과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손영조(경찰청 수사국)

이 논문은 현재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 예심제도의 실행 기구와 그 변화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북한법 연구는 법전과 공개된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하면서 새터민들의 증언에 비추어 법과 현실이 다르며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법전이나 공식 문헌과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역사적 형성 과정이나 변화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범죄나 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가용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계 때문이겠지만, 북한법제의 변화를 문리적으로만 접근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도 있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심 실행 조직의 변화, 즉 일반 범죄에 대하여 검찰소 예심원이 전담하던 예심을 사회안전기관과 군사기관에도 예심원을 두고 각각 별도로 예심을 담당하게 된 변화를 고찰하고, 법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새터민들의 증언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당 안전위원회’의 등장과 임무, 변화 등에 대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견주어 연혁적으로 고찰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 지난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의 장에서, 남북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서로의 형사법제를 부정하고 불신할 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미시적 연구는 서로의 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안팎의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형사법에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형사법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과거의 변화가 어떤 원인과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북한 형사소송법, 북한 예심제도, 당 안전위원회, 북한 예심원, 북한 형사 절차에 대한 당적 지도

1. 들어가며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 예심제도를 고찰할 것이다. 예심은 일본의 조선 강점기에 의용(依用) 형사소송법의 형태로 한반도에서 시행된 것으로, 남한¹⁾에서는 광복 이후 사라져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북한 예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²⁾’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재산담보처분 등과 같은 기소 전 강제처분이 집행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2004년 북한의 ‘대중용법전’이 공개되면서 법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특히 형사소송법 분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1)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으로 북한에 대비하여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27쪽.

국 형사소송법 해석』³⁾이라는 책이 남한에 소개되면서 구체적인 해석과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그 실태와 현상을 알기 어려운 폐쇄 국가이고, 특히 범죄 현상과 관련하여 가용한 실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특성상, 법전에 기재된 조문들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새터민의 증언과 입수 가능한 북한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추정하는 정도이다. 이 연구도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문헌 자료와 기존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필자가 면접한 북한 인민보안성 간부 출신 새터민과의 인터뷰를 엮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이 글은 북한 예심제도를 법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변하지 않은 것과 변화가 있는 것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한반도에서 예심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자면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 말엽까지 보아야 하겠지만, 1945년 11월 북조선 사법국 포고 제2호 『북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으로 ‘일본식민통치하에서 실시되던 모든 법과 규정들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후 새롭게 마련⁴⁾된 예심제도로부터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공개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제·개정 형사소송법전의 비교 등을 통한 절차나 제도의 변화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물로 충분하므로, 이 글에서는 법전에 나타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법전만으로는 알기 어렵거나

3)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설서로, 서지사항으로는 저자를 알 수 없다. 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이라 한다.

4) 1946년 3월 6일에 공포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호의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재판소·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 원칙』.

기존 연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예심 절차의 적용 실태⁵⁾와 변화를 고찰해보고,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추론해보고자 한다.

예심제도는 남한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2절에서 개괄적으로나마 예심제도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고, 제3절에서는 예심제도의 변화 중에서 특히, 실행 조직과 기구의 변화를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대내외 사정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이유를 고찰하려 노력하였다. 북한의 폐쇄성, 특히 범죄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실증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구를 위한 가용 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새터민 중에 인민보안성 근무 경력자 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문헌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면접 조사를 통해 보충하였다. 결론에서는 북한 형사사법제도 특히 예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였다.

2. 예심의 의의와 절차

북한 형사 절차상 예심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발된 범죄자와 범죄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예심원

5) 북한 형사 절차의 적용 실태에 관하여는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 절차와 적용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권오걸,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심 절차,” 『法學論攷』, 제25집(대구: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등의 연구들이 있다. 법전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거나, 예심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재구성한 것들이다.

의 소송 활동⁶⁾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예심의 임무를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의 임무(제134조)가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임에 비추어 예심은 증거의 수집과 여죄의 발견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재판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⁷⁾ 예심 단계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⁸⁾

- 피심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피심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예심에서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 법적 책임을 지울 대상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 고착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증거물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새 증거들을 수집하여 적발된 범죄자를 피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은 수사에서 적발한 범죄와 여죄, 런루관계를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1쪽.

7) 재판 단계에서 증거 수집은 보충적인 것이라고 한다;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128쪽

8) 이에 대해 예심제도가 결국 공판정의 구두심리를 형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336쪽.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18쪽.

예심의 연혁으로 볼 때 임무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수사 단계에서 범죄행위자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고, 여죄 등 추가적인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예심원의 기소 전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예심원이 행사할 수 있는 처분이나 권한도 체포·구속, 압수 수색, 감정, 검증, 피심자 및 증인 심문, 재산담보처분 등 공소 제기 전에 행사되는 일반적인 임의적·강제적 처분행위 등이 있다. 현대 형사소송법은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수사·예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기소 전 강제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통제와 감시 절차를 두고 있다. 구소련의 법제를 사실상 그대로 계수한 북한의 사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예심기관의 기소 전 강제 권한에 대해 준법감시기구인 검사를 통해 감시·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검사는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통제¹¹⁾하

10) 북한 형사소송법 제정 이전에 발간된 사법성 문헌 자료에서도, 예심원의 임무를 “피심자를 재판에 회부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재판에 넘길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심리를 조직 수행할 만한 예심 자료를 획득하도록 사건 내용을 충분히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조사 해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법성법률편찬출판부, “형사소송법(총칙)해설,” 『사법 제3호』(1949), 29쪽.

11) 검사의 감시 임무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검찰감시법』이 있다. 검사의 감시 임무는 일반 감시와 수사·예심·재판에 대한 감시가 있다. 일반 감시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들에 대한 법의 준수집행 감시와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소송법 1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현장검증, 수색 압수, 식별, 예심종결 등과 같은 중요한 소송행위에 직접 참가하여 법적·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거나, 체포영장의 발부 또는 예심원의 결정서에 대해 승인, 의견 제시, 지시 등의 방법으로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검사의 일반 감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형사관계법』(법무부, 1993) 참조; 형사 절차상 감시에 대하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2, 115~116, 124쪽 참조.

도록 하고 있다. 예심에 대한 검사의 감시와 통제는 이 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 사건을 예심하는 기관은 인민보안성 외에도 검찰기관과 군(軍) 검찰기관이 있으며, 북한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하여 인민보안성 내 독립 부서로 철도보안국을 두고 따로 예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시행하는 예심은 관할에서 대상 관할, 대인 관할, 지역 관할, 능동적 관할로 구분¹²⁾할 수 있다. 대상 관할이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설정한 관할이다. 적간첩을 비롯한 반혁명사건은 국가보위부에서, 일반 범죄 사건은 인민보안기관,¹³⁾ 검찰기관에서 예심하되 각 적발한 기관의 예심 부서에서 예심한다. 대인 관할이란 죄를 범한 사람에 따라 정한 관할이다. 군인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범한 범죄는 군사기관에서 예심하되, 일반 범죄는 군사검찰기관, 반혁명범죄는 인민군보위기관이 예심하고, 군사 활동을 침해한 범죄 사건은 범죄자가 군인이 아닌 경우라도 군사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인민보안원과 인민보안기관 종사자들의 범죄는 검찰기관에서 예심¹⁴⁾한다. 지역 관할은 범죄자의 주거와 관계없이 범죄가 감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는 먼저 적발한 지역에서 예심을 실시한다. 능동

12) 저자미상, 『형사소송법학』, 226쪽, 필자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문헌 자료이나 서지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1984년 이후 1992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나 구성으로 보아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의 초판일 가능성이 높다. 이하 『형사소송법학』이라 한다.

13) 2000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의 명칭이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민보안기관으로 수정되었다.

14) 인민보안성 근무 경력이 있는 새터민 중 최근에 탈북한 A씨에 따르면, 과거 중앙검찰소 3국 3처 3과가 보안원들의 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감시과였는데, 2001년부터 인민보안성 내에 검찰국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2012.8.9, 필자 면담).

적 관할은 관할 외 사건도 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으로 융통성을 두는 것인데, 통상 검사의 승인 절차와 같은 통제를 받거나 관할이 있는 예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 예심의 개시

예심원은 범죄 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시작결정이란 누가 언제부터 어떤 범죄 사건을 맡아서 예심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심시작결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한다. 이때부터 예심 기간이 계산된다. 따라서 예심 중에 예심원이 바뀌는 경우 새로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른 범죄와 범피자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한다.

예심원이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는데, 이를 ‘립심(立審)’이라고도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서라는 문서에 예심원의 이름, 결정 날짜, 피심자의 이름, 적용 법조항, 결정 이유 등이 기재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때부터 피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작성된 형사책임추궁결정서는 피심자에게 보여주고 그 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따라서 적용 법조의 변경이나 추가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2) 강제처분

북한도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색·

압수와 재산담보처분을,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와 구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예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대인적 강제처분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 구속이 있는데, 구속에는 구류 구속과 자택 구속, 지역 구속이 있다. 구류 구속이 남한의 구속과 유사한 강제처분이고, 자택 구속과 지역 구속은 피심자를 별도의 구속 시설에 가두지는 않지만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자택과 일정 범위 지역 내로 제한하는 조치로, 가택연금(家宅軟禁)에 견주어볼 수 있겠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영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영장 발부권은 검사에게 있다. 그 외 형사소송법 제14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이나 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금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금이 활용되고, 예심에서는 체포와 구속 처분이 행해진다고 한다. 구금 결정이 승인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가 구금되는 장소를 ‘구금장’이라 한다. 따라서 구금장은 수사 부서(감찰과, 수사과)에서 관리하고, 예심 부서는 구류·구속 처분 결정이 승인된 자를 가두어 두는 구류장¹⁵⁾을 관리한다고 한다. 구속 처분은 예심원이 결정서로 결정하는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속 처분은 1992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까지는 이를 ‘보전 처분¹⁶⁾’이라 하였다.

-
- 15) 인민보안성의 경우 예심국이 따로 떨어져 별도 건물을 사용하지만, 보안국이나 보안서의 경우는 같은 관서 내에 구금장과 구류장을 따로 사용한다. 구금장은 일종의 조사 대기실 개념으로 일반 방실 구조로 철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나, 구류장은 철창의 감옥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 16) 1992년 개정 형사소송법부터 ‘구속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와 구속은 처분을 받는 대상자인 피심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기간도 중요한 부분이다. 체포와 구속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몇 차례 변경¹⁷⁾되었지만, 대략 예심 기간¹⁸⁾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만난 보안원 출신 새터민은 예심 기간에 대하여 소송법상으로는 최장 4개월이지만, 6개월 정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흥미로운 증언¹⁹⁾을 하였다. 소송 기간의 산정 방식이 남한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기간의 계산 조항(제84조)²⁰⁾에도 나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에 대한 재확인²¹⁾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2) 대물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절차로 수색·압수가 있고, 사회주의

1987년에 출간된 리재도, 『형사소송법(2판)』에서도 ‘보전 처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17)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

형사소송법 제 개정 연도	구류 구속 기간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	무기한(기본 2개월 + 1차 1개월 연장 + 2차 연장 기한 없음)
1992년, 개정 형사소송법	최장 5개월(기본 2개월 + 1차 1개월 연장 + 2차 2개월 연장)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	최장 4개월(기본 2개월 + 1차 1개월 연장 + 2차 1개월 연장)

- 18) 체포와 구속 기간에 대하여는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83쪽 <표 IV-1> 참조; 다만, 이 표에서 2004년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상 구류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기본 2개월 + 1차 2개월 연장 + 2차 2개월 연장)로 기술한 것은 재확인²²⁾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9) 주14)의 A씨에 따르면 금, 토, 일은 ‘사건 안 보는 날’이라고 해서 구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예심은 최장 4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까지 연장되며, 재판대기 구류 기간(25일, 제282조)도 40일 정도까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 20) 각 형사소송법 조문번호는 2006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형사소송절차의 특징 중 하나인 재산담보처분이 있다. 이것은 모두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색과 압수는 예심원이 작성한 결정서를 검사에게 승인받는 형식을 취하고, 재산담보처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245조)에 예심원의 결정으로 행해진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형소법 제14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승인 없이 수색과 압수가 가능하다. 수색과 압수의 결정에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1992년 형소법 개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전에는 예심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승인이 아닌 단위 책임자의 비준으로 수색과 압수가 가능하였고, 원칙적으로 수사일군에게는 수색과 압수의 권한이 없었다. 수색과 압수는 압수 대상 물건이나 문서에 대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결정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예심원의 제출 요구에 대해 기관·기업소·단체 및 국민들이 순순히 응하기 때문에 강제처분으로써 수색과 압수가 행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손해보상 규정(제8절 제70~79조)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절차 없이 손해보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산담보처분이 행해진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보장처분(保障處分)’²¹⁾이라 하여 제98조에 규정하고 있었다. 피심자(범죄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에 물질적

21) ‘保障處分’이라는 용어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서 제26호, 『北朝鮮의 檢察所豫審及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關한 法令』(1946.6.20) 제23조에 처음 규정되었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보장처분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1970년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재산담보처분’이라는 용어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장처분에 대한 실무 서식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국사편찬위원회, “예심사업지도서(제1집, 1947),” 『북한관계 사료집 XIX(1947년~1951년)』, 32~35쪽 참조.

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자와 그 연루자의 재산도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17세 미만 피심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후견인이거나, 성인 피심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소비한 가정성원을 의미²²⁾한다. 재산담보 처분의 범위(제247조)는 손해배상이 청구된 량 또는 몰수할 재산량²³⁾만큼 한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즉 당사자와 가족의 한 달분 식량과 생활비, 소농 기구와 가축(소, 말은 제외), 생활용품(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학용품, 어린이용품, 장학금, 사회보험금, 연금 등은 담보처분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²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색, 압수나 재산담보처분 등은 모두 2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249조).

3) 그 밖의 예심행위

예심기관의 강제처분 외에 피심자나 증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문(제162~175조)과 심리실험(제202~205조), 수집된 증거에 대한 과학기술적 증명 수단으로 검증(제192~201조)과 감정(제206~215조)이 있다.

(1) 심문

심문은 예심에서 피심자, 증인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 작성의 방법으로 증거로 고착시키는 절차이다. 피심자 심문(제162~175조), 대질 심문(제235~239조), 증인 심문(제225~234조), 식별 심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91쪽.

23) 2006년 개정 형사소송법(제247조)에서 ‘또는 몰수할 재산량’이 수정 보충되었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91~192쪽.

문(제240~243조) 등이 있다.

피심자 심문은 대표적인 예심 단계에서의 심문으로 예심원이 작성한 피심자심문조서로 작성되어 증거로 고착되며, 진술자의 서명과 지장 날인을 필요로 한다. 예심원과 피심자 사이의 1:1 심문 방식과 다수 피심자 간 분리 심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규정을 두고 강압이나 유도(덧걸이-유도) 등의 심문 방법을 비법적인 심문 방법이라 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심자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인권 자료나 새터민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피심자 심문 방법의 한 형태로 대질 심문이 있다.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 사이의 말이 서로 다를 때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심문 방법이다. 이를 ‘맞대여 놓고 하는 심문’이라고 하며 이를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 ‘맞대여 놓고 하는 심문 조서’²⁵⁾라고 한다.

증인 심문은 남한의 참고인 조사에 견줄 수 있다. 증인에게는 진술의 의무가 부과되고, 허위로 진술할 경우 일반 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거짓 신고·진술죄에 해당하여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증인은 예심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인의 대상이 된다. 구인 결정은 예심원이 하는데, 구인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증인 심문도 1:1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미성인의 경우, 부모나 교원, 후견인, 기타 보호자 중에서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25)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9), 58쪽.

증인 심문의 특수한 형태로서, 피심자 혹은 증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제시하고 가려내게 하는 소송행위로 ‘식별 심문’이 있다. 식별 심문에는 2명의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식별심문조서로 작성 고착된다.

(2) 심리실험

심리실험은 남한의 수사 방법 중 현장검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나 물체의 상태, 특징을 그 장소나 물체와 관련하여 과거에 있었던 행위나 현상을 실험의 방법으로 되풀이함으로써 확인하는 예심행위이다.²⁶⁾ 예를 들면,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한 침입절도 범죄에서 범죄자가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와 비슷한 환경 조건하에서 증인의 위치에서 그러한 사실을 듣거나 볼 수 있었는지, 혹은 그 창문으로 범죄자가 침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예심원이 같은 장소에서 직접 듣고 보거나, 범죄자에게 재연시켜 봄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실험 대상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에 첨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실험은 2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심리실험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게 된다.²⁷⁾ ①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실험으로, 일정한 지점에서 고함 소리나 그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이다. ② 볼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2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147쪽.

27) 『형사소송법학』, 265~266쪽 참조.

거리 또는 조건에서 그 사물 현상을 볼 수 있거나 식별해낼 수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③ 일정한 행위 수행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④ 그러한 원인에 대하여 바로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를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3) 검증과 감정

검증과 감정은 증거의 수집과 범죄 사실의 과학적인 증명 방법에서 중요한 예심수단 중의 하나이다. 검증에는 범죄현장 검증과 증거물 검증,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과 산 사람에 대한 검진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심리실험도 실험의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내거나 검토·확인하는 검증의 특수한 형태를 말한다.²⁸⁾ 감정은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과학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으로, 감정인은 검증, 검진 등에 참가하여 필요한 자료와 사실 또는 현상을 수집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범죄현장 검증은 남한의 수사방법 중 현장 감식과 비슷한 것으로,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물 검증은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고 하는 검증을 말한다.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또는 어두워서 현장에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²⁹⁾ 시체에 대한 검증은 예심원의 참가 아래 법의학감정인이 한다. 1980년대 출간된 문헌 자료³⁰⁾상으로 법의학감정인은 보건부 산하에 ‘중앙 법의학감정원’과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56쪽.

29) 위의 책, 157쪽.

30) 『형사소송법학』, 269쪽 참조.

‘도 법의감정원’과 같은 전문 조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 사람에게 대한 검진은 사람의 몸에서 여러 가지 흔적을 발견하거나 육체적 특징, 기타 상태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신침해사건에서 각종 손상과 노동 능력 상실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발육 상태가 어떠한지 기능 장애는 없는가를 확인한다. 검진은 예심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법의감정의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

감정은 과학적 증명의 수단으로, 전문 감정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인민보안성에 기술감정처를 두어 지문, 혈청, 정액, 머리카락 등을 감정하거나, 토지 감정, 기계 감정, 전기 감정 등 각종 기술 분야 감정 업무를 수행³¹⁾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의 종류에는 ① 주검의 원인이나 상해 정도 등을 감정하는 법의학 감정, ②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범죄자나 증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는 법정신병학감정,³²⁾ ③ 물질의 화학 성분을 감정하는 법화학감정, ④ 범죄와 관련이 있는 손 흔적, 발 흔적, 파괴 흔적 등의 여러 흔적을 조사하고 원인을 내리는 흔적감정, ⑤ 범죄와 관련된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밝히는 필적감정, ⑥ 총기의 발사 여부와 발사 시간, 사격 거리와 방향, 사격 장소, 발사한 무기의 종류와 형태 등을 밝히는 탄도학감정, ⑦ 기계, 설비, 건설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를 밝히는 기술감정, ⑧ 회계계산 또는 결산의 정확성 정도, 부족액 등의 해명을 위한 회계감정, ⑨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확정하는 인물감정이 있으며, 이외에도 음성감정, 문서감정, 문학예술작품에 대

31)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50쪽.

32) 법정신병학감정기관으로 조선49호연구소가 있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학』, 269쪽 참조.

한 감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³³⁾

4) 예심의 종결

예심의 종결은 예심을 끝마치는 행위로 예심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범죄 사건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다 밝혀져 피심자를 재판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예심원은 예심종결 절차를 밟는다(제245~260조).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여하에 실시하며, 예심을 종결하는 사실을 피심자에게 알려주어 피심자에게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이때 피심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예심종결조서로 기록하여 남긴다.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넘겨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기소장 작성을 제8장 기소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예심원이 기소장을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기소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심에 대한 검사의 감시는 체포영장의 발부와 예심원의 결정서에 대한 승인 또는 의견 제시, 지시 등의 형태로 준법감시하도록 하거나, 각각의 예심 절차나 예심원의 결정을 검사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심의 종결 절차에는 반드시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예심의 진행 경과를 감시하도록 한다. 예심 종결 단계에서 피심자가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 검사가 그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64~165쪽.

자리에서 그 의견에 대한 취사 여부를 결정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검찰 감시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3. 예심의 변화와 의미

앞에서도 구류 구속의 기간이나 체포영장 제도의 등장 등 부분적인 예심의 변화를 간략하게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 효력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예심의 주체와 권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절차와 방식, 효력의 변화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예심의 주체와 대상의 변화

예심은 예심원에 의해 실행된다. 그런데 예심원의 소속 기관은 변화가 있었다. 1950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반혁명범죄나 반국가적 범죄로 분류되는 유형이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한 예심을 검사와 검찰소 소속 예심원이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안전기관(현 인민보안성) 소속 예심원과 인민무력기관, 검찰소에 각 예심원을 두고 관할에 따라 예심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 대상 범죄(형사소송법 제86조)가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현재는 대상 범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예심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제, 무슨 이유로 생긴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공식 자료인 법전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다른 문헌 자료를 통해 보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1) 검찰소 예심원에 의한 예심

1946년 3월 6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호의2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司法局裁判所檢察所의構成과職務에關한基本原則」에 따르면, 각 검찰소에 예심원을 두고, 예심원은 소속 검찰소 검사의 지시를 받아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건을 예심하도록 하였다(제46조). 같은 해 6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26호 「北朝鮮의檢察所豫審及保安機關의刑事事件審理에關한法令」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독직죄(瀆職罪)·뇌물죄 등 11개 범죄와 기타 범죄 중 어려운 사건은 예심을 하도록 하되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예심할 권리가 있다(제15조).³⁴⁾ 따라서 예심 전 단계에서 보안기관이 사건을 취급(수사)할 때 예심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는 예심 없이 바로 공판 절차로 진행하였다.

1950년 3월 3일,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예심원은 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 예심 대상 범죄인 필요적 예심 사건과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회적 의의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예심할 수 있었고, 검사도

34) 제15조 다음에 기재한 사건은 반듯이 예심원이 예심을 행한다.

1. 행정기관의 대표자의 직무를 실행하는 데 반대하는 죄(공무집행방해죄)
 2. 독직죄
 3. 장물죄
 4. 무고죄
 5.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죄(태만)
 6. 살인죄
 7. 중한 상해죄
 8. 도덕을 반한 죄(강간 약취 유괴 등)
 9. 강도죄
 10. 공갈죄
 11. 고의로 남의 재산을 없애는 죄(毀棄罪, 횡령배임, 방화죄 등)
- 기타 범죄는 사건이 어려운 때에만 예심원의 예심을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심원의 예심을 행하지 않는다. 검사는 어떠한 사건을 물론하고 자기가 예심을 맡아서 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직접 예심하거나 예심원에게 예심을 지시할 수 있었다(제 86조). 다만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보위기관 심사원이 예심하도록 하였고, 검사도 이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었다. 이에 비해,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이 있는 군관, 예심원 이외의 내무원 및 로동, 세무, 상업, 소방 등 제기관의 감찰원을 수사기관으로 하였다(제79조). 예심 대상이 아닌 사건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여 공판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제81조).

이상과 같은 초기 북한 형사소송절차는 당시의 구소련 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구진은 그의 저서 『북한법의 연구』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이 1926년에 제정되어 1960년 개정될 때까지 시행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 형사소송법’을 모방³⁵⁾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당시 북한 사법성 문헌 자료에서도 구소련 사법성법률출판부의 1946년판 형사소송법 책자를 번역하여 사용한 사실³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 법학자 홍극표의 법제정사 구분 기준에 따르면, 제2단계와 제3단계에 해당³⁷⁾하는 것으로 ‘일제악법의 청산’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로 분류된다. 구소련을 모방하다 보니 수사기관도 세무, 상업, 소방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5)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서울: 박영사, 1975), 230쪽.

36) “본고는 스프로고빗치 교수 저 『형사소송법』 1946년판에 전적으로 의거하였는 바...,” 사법성법률출판부, 『사법 제3호』(사법성법률출판부, 1949), 38쪽; “이책 의원문은 쏘련사법성법률출판부 1946년도판이다. 번역가 박상진, 교열자 차순봉,” 사법성사법출판부, 『트·쓰·쓰뜨로고빗치 형사소송(5)』(사법성사법출판부, 1950), 표지 뒷면.

37)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서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5)에서 재인용.

(2) 사회안전기관 및 검찰소 예심원에 의한 예심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소 소속 예심원의 전속 사무로, 반국가적 범죄, 즉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정치보위기관 심사원의 전속 사무로 행해지던 예심은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안전기관에도 예심원이 배치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법률의 개정으로 본다면,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결정으로 개정³⁸⁾된 형사소송법(1975년 1월 1일 시행)으로 추정³⁹⁾할 수 있다. 1973년 5월 10일에 발행된 『조선문화어사전』에서는 ‘예심원’을 “... 검찰 및 사회안전기관의 일군”으로 풀이하고 있고,⁴⁰⁾ 1992년에 발행된 『조선말대사전 ②』 이후로는 “예심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일군”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미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발행된 북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도 예심은 국가정치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 소속 예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적 예심과 같은 예심 대상 범죄에 대한 열거나 제한도 이 시기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기관은 사회안전원과 인민군군관, 즉 보위기관의 해당 부서일군으로 제한(제50조)⁴¹⁾되었다.

법제사적인 면에서 홍극표의 북한법 시기 구분 기준에 따르면, 이

38)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와 관련하여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과천: 법무부, 2004);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과천: 법무부, 2005),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등 남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헌 자료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제3차 개정 시기를 1976년 1월 10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9) 이 법전은 현재까지 필자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정적 견해로 밝힌다.

40)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73), 1044쪽.

41) 『형사소송법학』, 201쪽;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124쪽.

시기는 제7단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로, 사회주의헌법이 제정(1972년)된 것을 비롯하여 북한의 전 국가체제를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의 국가로 정비한 중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법의 변화에 대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수식어가 붙은 김정일의 등장과 부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4년에 등장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규정은 특히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정·실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²⁾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대하여도,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정치적으로 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여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보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위업을 다그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기술하였다⁴³⁾.

강구진은 북한법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우세하였던 시기를 1958년까지로 구분하여, 1958년 이후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였고, 중소분쟁을 겪으면서 1960년대에 이르러 ‘주체’가 등장하는 등 독자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⁴⁴⁾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이 모두 구소련의 그것을 번역해놓은 수준으로 모방되었던 초기 법률 제정 시기에 비해 상당 부분 ‘탈소련화’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 범죄에 대하여 검찰기관에 예심원을 두고 전담하던 것을 사회안

42)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204쪽;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391쪽에서 재인용.

43) 홍극표, 위의 책, 278쪽; 최종고, 위의 글, 392쪽에서 재인용.

44)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9~69쪽 참조.

전기관에도 예심원을 두도록 한 것은 중국 예심제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초기에는 구소련의 영향과 손중산의 광주군정부가 반포한 『형사소송률』에 따라 반혁명사건의 예심은 국가정치보위국이 담당하고 보통 형사사건의 예심은 검찰원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공안기관이 확대되면서, 1958년에 이르러 중국 공안부가 『예심 업무수칙』을 통해서 ‘예심이 공안기관의 전문 업무’임을 명확히 하였다.⁴⁵⁾ 그러나 예심이 공안기관의 담당 사무임을 명확히 밝힌 법은 1979년 제정 형사소송법이 처음이다.

예심이 사회안전기관의 임무로 분류된 기존 연구 자료⁴⁶⁾를 보면, 광복 이후부터 전쟁의 혼란기 동안 주로 ‘방첩(防諜)’에 방점을 두었던 시기인 1951년에 신설된 사회안전성에 예심국이 있었고, 1952년 10월 9일 다시 내무성 사회안전국으로 바뀐 시기에는 북한 주민 감시, 인민군에 대한 정치 사찰, 정부기관 주요 인사·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 및 예심의 임무가 부여 되어 있었다.⁴⁷⁾ 이후 1956년 내무성 편제가 대폭 확장되어 9국 7처였던 시기에는 예심을 전담하는 부서를 발견할 수 없다. 1962년 내각 개편으로 ‘사회안전성’이 다시 설치되었고, 1972년 사회주의 신헌법 채택과 함께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되

45) 曹文安, 『預審制度研究』(北京: 中國檢察出版社, 2006), 294~299쪽 참조.

46)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20~23쪽 참조.

47) 1950년대 당시 예심원의 실무 자료 내지 예심원 양성을 위한 사회안전성 간부 학교 교육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기 작성 ‘예심례형’을 보면, 1950년 4월 정치보위국 예심부의 ‘예심사업례형’에서는 “함경남도 정치보위부 예심원 최동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1952년 2월 사회안전성 간부학교의 ‘예심보충교재(형법 및 예심례형)’에서는 “평안북도 사회안전부 예심원 최광율”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예심례형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형법상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제74조(파괴행위)와 제71조(간첩행위) 범죄이다.

면서 ‘사회안전부’로 개칭된 이듬해인 1973년 5월 사회안전 업무와 정치보위 업무를 분리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로 사회안전부 소속 정치보위국은 국가정치보위부로 분리되었다. 앞에서 본 사전 해설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사전의 출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일반 범죄에 대한 예심에 사회안전기관 소속 예심원이 포함된 것은 1972년 신헌법 채택을 전후한 때로 추정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보면, 반국가적 범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보위기관에서 예심을 담당해왔음에 비해,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소 예심원이 담당하던 것을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안전기관에도 예심 부서를 두어 검찰소와 함께 자체적으로 예심을 담당하도록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심 대상도 열거 방식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

아쉽게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헌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연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광복 직후 혼란의 시기에 소련식 사회주의 법체계 모방에 급급하였던 북한의 법령과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도 교류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광복동이가 20살 청년으로 자라난 때이다. 정부조직체계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았을 것이고, 사회안전기관이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을 것이다. 따라서 체제 불안 또는 반국가적 범죄의 단속과 김일성 독재 완성을 위해 보위기관의 활동이 우선되었던 초기 북한의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주민 사

찰이나 범죄 단속기관, 즉 법적 통제기구도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는 사회안전부 소속의 1개 국이던 정치보위국이 국가정보위부로 독립하여 주민 사찰과 정치사범 단속을 담당하면서 사회안전부와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각 도, 군 인민위원회에까지 조직되어 비교적 경미한 행정적 위반행위를 다스리게 하였다.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시행하여 반혁명 적대분자를 색출하도록 하는 등 유일지배체계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았던 1960년대에 비해,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주민 사찰 및 단속 기구를 분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분산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 북한 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1950년대 말에는 사실상 김일성의 단일지도체계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0년대 중반 후계자 청년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내 권력상층부에서의 숙청이 사실상 종말을 고한 가운데, 김일성의 독재적 지도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이 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김일성 이외의 권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체제의 구축이 진행되었던 때였다.

사회안전 조직이 규모와 인력 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집중지도 조직 규모가 1958년 12월에 이미 약 7,000명에 달하였던 사실⁴⁸⁾을 볼 때, 체제 안정과 독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인력의 양성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48)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심화 과정』(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70쪽 이하 참조.

정부는 공화국 수립 이후 10여 년 만에 공안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예심 업무를 공안이 담당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비록 북한이 6·25 전쟁으로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1970년대는 전국적 규모로 사회안전 조직망을 갖추고 소요 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1960년대 초부터 표면화된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와 쿠바 위기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보면서, 과거 소련 의존적 행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강구진의 연구⁴⁹⁾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말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가 상당 부분 탈소련화된 것도 예심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 예심제도는 중국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북한 예심기구의 변화는 당시 북한의 국내외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당 안전위원회와 형사 절차에서 당적 지도의 강화

북한 형사법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형사소송절차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당 안전위원회’이다. 거의 모든 새터민들에 의해서 당 안전위원회와 존재가 증명되고 있고, 수사에서 예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 부서(감찰과, 수사과)에서 필요한 수사 절차를 거쳐 예심회부 대상으로 판단하면,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면서

49)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227쪽 이하 참조.

검사의 승인 절차(비준)를 거쳐 예심 부서로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새터민⁵⁰⁾에 의하면, 실제로는 검사의 승인 절차 이전에 시·군·구역 단위 수준의 당 안전위원회에서 구류 여부를 결정하고, 당 안전위원회의 구류 결정이 내려지면 비로소 검찰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예심에 회부된다는 것이다. 당 안전위원회의 구류 결정 없이는 체포영장 발부는 물론, 예심회부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 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당 안전위원회는 당 책임비서, 인민위원회 법무부장, 보안국(서)장, 보위부장, 검찰소장, 재판소장, 당 조직부 행정부장(간사 또는 서기 역할) 등으로 구성⁵¹⁾된 비상설 조직으로 월 1회 개최된다고 한다. 간사 또는 서기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부장이 보안국(서), 보위부, 검찰소 등 각 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접수하면, 당 간부부·조직부를 통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은 사실상 연좌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1명의 잘못으로 가족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잘못된 1명 때문에 건실한 애국군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먼저 예심회

50) 이하 내용은 앞의 주 14) 새터민 A씨와의 면접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51) 새터민 A씨에 의하면, 평양시 당 안전위원회는 책임비서, 인민위원회 법무부장, 보안국장, 보위부장, 검찰소장, 시당위원회 행정부장(서기) 등으로 구성되고, 군(구역)당의 경우는 책임비서(위원장), 조직비서(부위원장), 보위부장, 보안서장, 재판소장, 검찰소장, 군(구역)당행정부장(서기)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O도 보안국 보안원 출신의 새터민 B씨에 의하면, 도 당 안전위원회는 인민위원장(위원장), 당 책임비서(고문), 보안서장, 검찰소장, 인민위원회 법무부장, 당 조직부 행정부부장(서기)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당 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증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다.

부 대상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앙당 결정으로 예심회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구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예심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 가족이나 4촌 이내에 974부대원⁵²⁾이 있는 경우, ② 가족이나 4촌 이내에 MIG21 이상 기종의 항공기 비행사(공군 조종사)가 있는 경우, ③ 자식과 4촌 형제 이내에 군복무자가 7인 이상인 경우, ④ 직계가족이 일본 총련(중앙, 도지부) 소속 간부인 경우, ⑤ 항일 투사의 가족 등이다. 그 외에도 사상범이나 반국가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사건의 행위자가 당 간부인 경우, 해당 당비서가 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당과 조직에 충실했으며, 1건의 과오도 없었으므로 당 조직이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변호하면 중앙당에 보고하여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 간부나 책임비서 등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거나 뇌물이 오가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당 안전위원회 토의 결과 예심회부가 결정되면, 구류결정서가 작성되는데 당 행정부 직인이 찍힌 당 안전위원회 구류결정서는 구류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지장을 날인 받아 관할 검찰소로 보낸다. 이를 받은 검찰소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건 기록은 예심 부서로 이관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심이 시작되며, 구류 대상자는 공민증을 빼앗기고 삭발 당한 채 수인번호가 매겨진 죄수복을 입고 구류장에 감금된다. 당 안전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구류 결정 외에도 대상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노동단련형을 결정할 수도 있고, 관리소⁵³⁾로 보내는 결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예심에 회부되지

52) 김정일 호위부대로 알려져 있다.

53) 새터민 A씨는 평양 인근의 14호 관리소와 18호 관리소를 사례로 증언하였다.

않고 당 안전위원회 결정으로도 집행까지 가능하다. 예심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민증을 빼앗기지 않은 채 생활할 수 있어서 이들을 일컬어 ‘이주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권에 준하는 권한으로, 영미법계의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의 권한에도 견주어볼 만하다.

당 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공식 문헌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법학』의 형사사건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 ‘안전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⁵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안전위원회에서는 사회안전기관들에서 제기하는 모든 사건을 집체적으로 연구하고 심중히 협의한 다음 간첩사건을 비롯하여 정치적색채를 띤 사건들은 정치보위부에 넘겨 취급하게 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한 일반범죄자들 가운데서 행정적으로 처벌할 대상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겨 취급하게 하고 법적으로 재판을 하여야 할 대상들은 검찰기관에 넘겨 취급하게 하여야 합니다”(『사회안전사업에 대하여』 10권, 146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안전기관에서 제기하는 사건들을 안전위원회에서 토의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러므로 제기된 형사사건을 처리하려 할 때에는 해당 안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론을 받아 법적 수속을 밟아야 한다.

54) 『형사소송법학』, 195 ~ 196쪽.

초기 당 안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형사사건제기’는 범죄를 발견하여 사건조사에 착수하는 단계, 즉 위 부적 단서인 ‘신고’나 기관의 자체적인 범죄 탐지와 같은 인지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발견한 때에 수사, 예심, 검찰, 재판 기관 종사자들이 내리는 결정⁵⁵⁾이다. 사실상 수사의 직전 단계로, 안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과 성격을 판단하여 어느 기관에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전배당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의 증언을 토대로 앞에서 살펴본 당 안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위원회 용어가 등장하는 국내 선행연구 자료⁵⁶⁾를 보면, 8월 중 파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유일지도체계를 구축한 김일성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혁명 적대분자 색출과 이들에 대한 배제·청산작업을 위해 ‘중앙당집중지도부’를 두었는데, 그 구성원은 중앙당에 중앙당 행정부장 및 부부장, 조직지도부장 및 부부장과 3과장, 내무성 안전국장, 최고검사총장 등으로 편성되었고, 산하에 집중지도 성원으로 중앙당의 과장 및 지도원급을 비롯해 각 성(省) 당위원장, 각 도당 부위원장 및 지도원급 당직자, 김일성대학 졸업반 학생 일부까지 포함된 약 7,000명 규모의 조직이었다.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 도에는 ‘도 안전위원회’를, 군에는 ‘군 안전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안전위원회는 정치적 성격을 띤 범죄만을 취급하

55) 『형사소송법학』, 182~197쪽 참조.

56)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심화 과정』, 70쪽 이하 참조.

는 기관이었는데, ‘도 안전위원회’에는 사형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로의 연구에 언급된 안전위원회는 명칭과 구성원은 유사하지만, 임무와 권한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예심 절차에 당 안전위원회가 등장한 시기에 대한 새터민의 증언⁵⁷⁾은 다음과 같다. 1973년 5월 사회안전부 정치보위국이 ‘국가정치보위부’로 분리 독립되면서 당시 사회안전부장이던 김병하가 보위 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그에 대한 비리 혐의가 김정일에게 보고되어 중앙당 검열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김병하가 이를 거부하고 저항했다가 반당·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는 당이 하는 것이지 국가정치보위부가 하는 게 아니다”고 하여 국가정치보위부의 명칭에서 ‘정치’를 빼고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위기관, 사법 검찰단 특히 특수 부문들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 자체로 모든 사건을 판단하게 하지 말라. 당에서 책임지고 결정 내리게 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고, 이때부터 당 안전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당 안전위원회가 정확히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은 형사사법절차에도 당 안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한 당적 지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당 안전위원회의 등장 시기에 대한 새터민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초 북한의 법적 통제기구의 분화वाद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범죄행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한 적발·단속이라는 것은 그 실행기관의 자체적인 탐지활동에 의해

57) 이하 내용은 앞의 주 14) 새터민 A씨와의 면접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의 신고⁵⁸⁾에 기초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신고 대상 기관이 많아진 것이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서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신고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범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다가갈수록 다른 범죄 또는 추가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무처리 과정에서 관할이나 적용 범주 등의 문제로 담당 기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회안전기관에 신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보위기관, 검찰소,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에 같은 내용으로 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를 진행할 경우, 보는 관점과 담당 업무 및 관할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진행 과정과 결정을 하게 되거나, 여죄 등 추가적인 범죄의 인지 과정에서 사건 이관의 문제를 놓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더하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권한이나 위상이 대등적·수평적이어서 서로 협력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특정 기관의 영향력과 결정이 주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 알력과 갈등으로 충돌이 생기거나, 부정과 비리가 생길 여지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초대 보위부장 김병하 사건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보위기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의 권한과 위상의 우열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알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1960년대를 지나면서 ‘주체’의 등장과 함께 김일성 유일지

58) 북한에서는 이를 ‘신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배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위 ‘정치 범죄’에 대한 무게는 다른 일반 범죄의 그것과 달랐을 것이다. 사회안전부장으로 신임을 받던 김병하가 신설된 보위부장으로 옮겨간 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보위부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보위부가 독립기구로 등장한 지 10년도 안 되어 중앙당 검열로 그 수장이 처단된 것은 그만큼 기관 간 힘의 불균형이 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보위부는 제2대 보위부장 리진수 사망 이후 수장 자리가 공석으로 비워져 있으며, 1992년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한 이후 제1부부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1960년대에는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반혁명 적대분자에 대한 적발·처리가 이루어지고, 정치 범죄와 일반 범죄의 구분 없이 사회안전부가 모두 담당하고, 예심도 특정 범죄 사건에 한하여 검찰소 예심원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기관 간 갈등과 충돌의 소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1970년대 이르러 정치 범죄는 보위기관에서, 일반 범죄는 사회안전기관과 검찰소에서, 경미한 행정적 위반행위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결과 보위부장이 처단되는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다. 그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 안전위원회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교통정리를 담당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북한 예심제도를 개괄하면서, 예심제도와 그 집행조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당수의 북한법 연구자들은 북한의 ‘법치

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 위기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많아졌고, 북한 사법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들이 새터민들의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법과 현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필자가 만나본 새터민들 중의 대다수는 특히 북한 예심에 대한 불만과 인권침해에 대해 언급한다. 그만큼 표면적으로 보이는 법전의 기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직까지 북한 예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한에서는 이미 없어진 제도라는 측면도 있지만, 범죄나 형사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그 속을 알기 어려운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 때문에 가용한 연구 자료의 획득이 쉽지 않은 것이 연구를 가로막는 더 큰 이유일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지난 남북교류 공간에서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에는 반드시 갈등과 충돌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남과 북은 서로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어느 쪽의 제도로도 서로의 주민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에게 다가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연구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사법 시대를 준비하면서, 일부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남한의 법률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면, 북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이면서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새터민들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는 비교적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지켜지는 편이라고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면서 조문의 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왔다. 실체법과 달리 절차법은 유추해석과 같은 모호한 해석과 적용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나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소위 ‘당적 지도’가 법전에 없는 ‘당 안전 위원회’라는 방식을 통해 형사 절차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다. 당 안전 위원회가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고 수사와 예심의 경계에서 작동된다는 것은 북한 형사 절차에서 예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달리 보면, 예심 이후의 절차가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심의 기소율과 유죄판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자백과 같이 예심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사건 담당 예심원이 심각한 문책을 받게 된다는 새터민들의 증언⁵⁹⁾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서 예심은 곧 처벌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과 제도가 그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법과 제도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일부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 예심제도는 그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집행기구와 절차 등이 변해왔다. 새터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형법이 바뀌어 모든 형량이 기존의 2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위기를 거쳐 오는 동안 북한 전역에 걸쳐 이른바 전과자가 너무 많아져서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40대 이상 남자의 60% 정도가 교화소를 경험했다고 한다. 당에서 토론된 바로는 유사시(전쟁) “총부리를 돌려달 놈이 많다. 그래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9) 새터민들은 이를 두고 ‘바지를 벗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는 것이다.

북한에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는 사회 저변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써 형량을 2분의 1로 줄이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도부나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형사 절차에서는 예심제도의 변화로 반영되었다. 최근에 일어난 북한 지도부의 변화와 형법의 변화, 그리고 당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권력 지형의 변화 등이 앞으로 북한 형사 절차 특히, 예심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조금 더 지켜 볼 일이다.

■ 접수: 10월 30일 / 수정: 11월 27일 / 채택: 11월 3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9).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73).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저자 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2004).
저자 미상, 『형사소송법학』.

2) 기타 자료

- 사법성법률편찬출판부, 『사법 제3호』(평양: 사법성법률편찬출판부, 1949).
사법성사법출판부, 『므·쓰·쓰뜨로고빗치 형사소송(5)』(평양: 사법성사법출판부, 1950).
저자 미상, “예심사업례형”(정치보위국 예심부, 1950.4).
저자 미상, “예심보충교재(형법 및 예심례형)”(사회안전성 간부학교, 1952.2).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서울: 박영사, 1975).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형사관계법』(과천: 법무부, 1993).
_____,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과천: 법무부, 2004).
_____,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과천: 법무부, 2005).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_____,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2) 논문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심화 과정”(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6).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서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3)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예심사업지도서(제1집, 1947),” 『북한관계 사료집 XIX (1947~1951년)』.

3. 국외 자료

曹文安, 『預審制度研究』(北京: 中國檢察出版社, 2006).

A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chang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of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and its practices

Son, Youngjo(National Police Agency)

The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 is consisted of four parts; investig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prosecution, judgmen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among them is important enough to determine the result of trial in realty. This article noted the changes and the meanings of the system.

In early days of founding a country, North Korea almost mimicked the laws of the Soviet Un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not the exception. Crim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ordinary crimes 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required crimes. The preliminary examiners belong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were in charge of the criminal cases needed preliminary examination. The ordinary criminal cases were treated in the social safety agencies.

In 1970's, the code of criminal of North Korea was amended that each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the social safety organization took charg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for each crime. After several years, the criminal proceedings were changed that the Party Safety Committee determined whether the criminal cases should be brought to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ss or not. However,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 did not reflect this change.

In this paper, author tried to analyz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bout such changes of 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North Korea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worked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until relatively recently. Since 1960s, when Kim Il Sung dictatorship was virtually completed, North Korea had been partly influenced by China in the field of law, not by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excessive forces of the Stat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of North Korea resulted in the change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Party Safety Committee started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he criminal cases should be brought to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ss or not.

In recent years, the new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 Un, has shown som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It is time to see what influences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and the criminal proceedings of North Korea will be led by those changes in the future.

Keywords: the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North Korea, the Party Safety Committee, the Party's instructions about the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